

# 사단법인 또 하나의 문화

## 정 관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또 하나의 문화(이하 “본회”)”라 하고, 영문으로는 "Alternative Culture"라 한다.

제2조(소재지)

이 법인의 주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부는 전라남도 해남군에 둔다. 기타 필요에 따라 추가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젠더와 청소년, 청년, 노년 세대를 위한 문화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학술·문화·교육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평등과 평화, 자율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안문화의 창출에 그 목적을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문화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
2. 대안문화 기획 및 교육, 미디어개발, 홍보사업
3. 청소년, 청년, 노년 세대 정책관련 시설 위탁운영
4.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 협력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 (1)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2) 본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 ①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탈퇴시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회원의 상벌)

-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포함)
3. 감사 2인

제12조(임원의 선임)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지체 없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및 사임)

-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② 임원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제한)

-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상임이사)

-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8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1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4장 총회

제20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21조(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5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총회의 경우에는 7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4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 사항

제25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및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5장 이사회

제26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1월과 7월중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이사회 경우에는 3일전까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서면 결의금지) 이사회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0조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1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5.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6장 재산 및 회계

### 제32조(재산의 구분)

-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②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3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탁금, 후원 및 협찬금, 기타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35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8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임원의 보수) 사업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7장 사무국

제41조(사무국)

- ①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2조(법인해산)

-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업무보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3.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기
이사장	조 형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150-5	4년
이 사	조 옥 라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1-115번지 202호	4년
	조 혜 정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277번지 93호 15/2	4년
	박 혜 란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신동아아파트 8-1203	2년
	정 진 경	충북 청주시 개신동 삼익아파트 102-1105	2년
	조 은 은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4-25	4년
	김 은 실	서울시 양천구 목2동 499-14	4년
	유 승 희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53-57	2년
	김 현 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한라비발디 101-503	2년
감 사	최 경 희		4년
	유니스 김		4년

제4조(창립회원) 이 정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지와 같다.

제5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성 명	주 소	서명
조 형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150-5	
조 옥 라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1-115번지 202호	
조 혜 정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277번지 93호 15/2	
박 혜 란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신동아아파트 8-1203	
정 진 경	충북 청주시 개신동 삼익아파트 102-1105	
조 은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4-25	
김 은 실	서울시 양천구 목2동 499-14	
유 승 희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53-57	
김 현 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한라비발디 101-503	

2019년 7월 18일

사단법인 또 하나의 문화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174-5, 302호(동교동)

이사장 조혜정

## 기본 재산 목록

(2019년 도 / 단위 : 원)

재산구분	수량		비고
부동산	67.53 $m^2$ (평가액, 134,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84-6, 대재빌라 302호	